

經濟環境의 變化에 따른 企業會計基準의 變遷 過程에 관한 연구*

李 正 浩**

《目 次》

I. 서언	3. 기업회계원칙 2차개정의 경위
II.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	IV.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 그의 개정
1. 기업회계원칙 제정 당시의 경제적 환경	1. 기업회계기준 제정당시의 경제적 환경
2. 기업회계원칙 제정 경위와 그 기본 성격	2. 1981년의 기업회계기준
3. 기업회계원칙의 전반적 체계와 내용	3. 1984년 기업회계기준 1차개정의 배경과 내용
4. 기업회계원칙이 경제관계 제법에 미친 영향	4. 1985년 기업회계기준 2차개정의 배경과 내용
III. 기업회계원칙의 1·2차 개정	5. 1990년 기업회계기준 3차개정의 배경과 내용
1. 1976년 기업회계원칙 개정 당시의 경제적 환경	6. 1990년 이후의 기업회계기준 개정배경과 내용
2. 기업회계원칙 1차개정의 경위 및 내용	IV. 결언

I. 서언

영국의 저명한 회계사학자 울프(A.H. Woolf)는 회계와 인간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기술해 놓고 있다. “회계는 문명의 한 표현이며 회계의 역사를 지배하는 법칙은 인류의 진보를 지배하는 법칙이기도 한 것이다.”⁽¹⁾ 이 말은 회계가 인간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겠다. 사실 회계의 발전 과정을 더듬어 보면, 회계는 주로 그 시대의 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을 뿐만

* 본 논문은 修善獎學文化財團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 서울大學 經營大學 教授

(1) Woolf, A.H., *A Short History of Accountants and Accountancy*, 1912의 서문.

아니라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회계와 경제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진화해온 것이 확실하다.⁽²⁾

1930년대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회계원칙의 생성과정을 보더라도 그것은 1929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증권시장의 붕괴에 따른 경제사회의 혼란과 이를 수습하려는 루즈벨트 행정부의 증권거래행정의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해 볼 때 회계원칙과 경제환경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회계원칙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지도하는 원리인 동시에 회계행위의 지침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의 경제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회계실무도 다르고 또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회계지침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회계실무를 지도하는 원리인 동시에 회계행위의 지침이 되는 회계원칙도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바뀌지 않고서는 현실에 적응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회계제도는 사회환경 및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용되어 발전해 나가는 사회적 시스템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기업회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의 요소는 크게 나누어 한 국가의 경제체제, 경제발전의 정도, 자본동원기구, 기업의 국제화 정도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경제환경 요인은 한 국가의 회계제도 수준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며 이들 제 요인의 변화는 한 나라의 회계행위의 지도원리인 회계원칙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생산활동의 주체는 기업이 되며 기업에 대한 자본 제공자인 주주나 채권자 중심의 회계제도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물론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주주나 채권자 이외에도 정부, 일반대중 등 다양한 이해 관계 집단이 있으나, 기업회계제도는 주로 주주와 채권자 권리의 보호적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기업회계제도는 경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경제 발전의 단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의 양적 규모가 커지고 회계 활동도 활발해 진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가 갖는 중요성도 증대하게 되고, 회계제도도 세련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본 조달이 개인 또는 국내의 증권시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회계 즉, 국

(2) Chatfield, M.,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revised edition, 1974. p.3.

제회계의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제화의 영향은 기업의 국제화와 자본자유화로 연결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이 국제화되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해외투자와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늘어나 외화환산회계가 필요하게 되어 제도화되기도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제상황하에서는 전통적인 역사적 원가주의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물가변동회계가 주창되고 제도화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제반 경제환경의 변수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제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통계자료와 문헌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의 변천 원인 및 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기업회계제도의 변화를 촉발해 왔으며 기업회계기준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

1. 기업회계원칙 제정 당시의 경제적 환경

6.25동란으로 인하여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입은 한국 경제는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 급속히 동란의 피해를 복구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전후의 한국 경제는 전쟁 중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파괴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UN국들의 원조에 힘입어 경제안정과 산업부흥을 목표로 경제부흥계획을 수립하였다.

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경제는 이와같이 미국의 원조와 활발한 전후복구 작업에 힘입어 전쟁전의 생산력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경제 각 부문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동란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 갔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전반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기업경영의 형태도 소유주에 의한 개인기업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대기업이라고 해야 몇몇의 국영기업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1958년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한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의 일반적 상황을 보면 우선 1953년부터 1958년까지의 GNP성장률은 4.8%에 달하였다. 외국 원조와 적자재정이 이 시기의 경제부흥의 주요 재원이었으며 통화량과 외자의 급속한 증가는 물가상승을 가속화

시켰다. 1957년부터는 점차 미국원조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질경제성장률과 통화량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물가상승률도 낮아졌다. 이러한 경제의 안정은 실질적으로는 불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설비가동률도 떨어졌다. 제조업 사업체 수는 1955년의 86,000개에서 1960년에는 152,000개로 1.8배나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이 기간 중 221,000명에서 275,000명으로 1.2배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종업원수의 증가율이 기업체수의 증가율에 미치지 않았던 사실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설립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3년~1955년에 걸쳐 있은 중소기업의 난립은 생필품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1955년~1956년에는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현상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7년부터는 과잉설비의 정리, 생산성의 향상, 경영기술의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합리화시책이 정부에 의해 강구되었다. 당시 소득은 낮고 소비성향은 높은 데다가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저축에 의한 공업화자금의 조달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따라서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조세징수를 통한 강제저축을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는 세입증대, 세출억제를 통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동시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정부는 신종세의 도입, 세율의 재조정 등 일련의 세수증대 및 재정투융자의 삽감을 기본으로 하는 세출억제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경영의 합리화조치로 1957년 말에 기업의 자산재평가법을 제정하였다.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은 법인 및 개인이 기업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감가상각을 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개혁과 자산재평가법의 실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회계제도의 확립이 시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수준은 미비한 단계여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로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회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기하는 한편 기업의 경제 및 경영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회계제도를 확립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기업회계제도의 개선·통일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이다.

2. 기업회계원칙의 제정경위와 그 기본성격

재무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통일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이에 앞서 기업의 회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원리로서의 회계원칙이 없어서는 안되었다. 환연하면, 재무제표규칙은 회계행위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칙이나 지침을 제정하는 기초원리로서의 회계원칙이 없어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필요성에서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있던 재정금융위원회 내에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를 두어 기업회계원칙의 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57년 11월 초에 상기 분과위원회는 기업회계원칙(처음에는 기업회계준칙이라 불렸음)을 기초할 기초소위원회 8명과 간사 2명을 선출하여, 동년 12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은행집회소에 모여 6개월여의 노력 끝에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는 방대한 작업을 끝마쳤다.⁽³⁾

처음에 기업회계준칙을 기초하기에 앞서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업회계준칙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기업회계원칙이란 것은 기업회계를 처리·보고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제기준이고 어디까지나 회계학의 학문적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재무부의 이름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기업회계원칙은 재무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기초소위원회의 이름으로 중간보고로서 공표하여 학계에 연구자료를 던지는 형식으로 하고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규칙을 별도로 기초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원칙은 학문적인 견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리·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규칙은 기업회계원칙의 뒷받침을 받아 재무제표의 표준양식과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원칙은 모범, 규칙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1958년에 제정된 원칙과 규칙은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고 있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기업에 근대적 회계방법을 보급하고 회계실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재무제표작성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58년의 우리나라 기업회계원칙은 1949년 일본의 기업회계심의위원회(당초의 명칭은 기업회계제도대책조사회)가 발표한 기업회계원칙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회계원칙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의 SHM회계원칙이고, 이에 미국회계학회(AAA)의 1948년 개정회계원칙⁽⁴⁾과 독일의 상법학자들이 들고 있는 대차대

(3)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制定經緯에 대한 설명은 李海東, 李秉彥 共著 [財務諸表規則解說] (一朝閣, 1959년)과 企業會計準則起草小委員會가 보고한 [財務諸表規則起草報告書] (上揭書, p.231)참조.

(4) AAA,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48 Revision.*

조표의 제원칙⁽⁵⁾을 가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원칙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간접적으로는 미국과 독일의 학문적 성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기업회계가 갖는 자의성과 사회성이라는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켜 회계행위의 규범을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에 대하여 기초소위원회들은 기업회계원칙 제정의 대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개의 기본방향을 채택하였다.⁽⁶⁾

① 회계원칙의 내용은 되도록 평이하고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형식으로 전개한다. 즉, 원칙의 내용을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이고 설명적으로 전개할 것인가 하는 회계원칙제정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당시 우리나라의 여전에 비추어 원칙의 내용을 평이하고 구체적이며 설명식으로 전개하였다.

② 평가는 원가주의를 따른다. 즉, 평가문제에 있어서 원가주의와 시가주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제국의 지배적인 입장인 원가주의를 택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기간손익을 정확히 하는데 시가주의보다 합리적이란 점에서 채택된 것이다.

③ 재무제표의 형식은 보고식으로 한다. 즉, 재무제표의 형식을 계정식으로 하느냐 보고식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기업회계가 종래의 경제사실을 기록한다고 하는데서 보고한다고 하는 점을 중시하여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④ 손익계산서는 당기업적주의에 의한다. 즉, 손익계산서를 작성·보고하는데 있어서 포괄주의와 당기업적주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당기업적주의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⑤ 기업회계원칙은 장래 상법과 세법의 개정을 전제로 초안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상법, 세법이 기업의 영구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사회성을 완전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이들 제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법, 세법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전의한 바 있다.

위에서 열거한 5가지의 기본방침에 따라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의 기초소위원회

(5) ① 진실성의 원칙 ② 명료성의 원칙 ③ 계속성의 원칙 ④ 단일성의 원칙.

(6) 財務諸表規則 起草報告書-企業會計準則起草小委員會-참조.

는 회계기준의 원리적인 내용을 기업회계원칙으로 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재무제표규칙안으로 기초하였던 것이다.

3. 기업회계원칙의 전반적 체계와 내용

위에서 기술한 기본방향에 따라 마련된 1958년 기업회계원칙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 위한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 즉, 1. 일반원칙 2.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계산서에 관한 원칙 3. 대차대조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기업회계원칙의 구성은 전술한 바 있는 SHM의 회계원칙을 따른 일본의 기업회계원칙에 바탕을 두고 제정한 것이다. 참고로 1938년의 SHM회계원칙의 기본구성을 보면 1.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2. 손익계산서원칙(income statement principles) 3. 대차대조표원칙(balance sheet principles) 4.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5. 주기 및 주석(comments and footnotes)의 5개의 부로 나누어 회계원칙을 정리해 놓았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할 당시에 연결재무제표작성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제외시키고 주기 및 주석은 재무제표내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하여 회계원칙을 다음과 같은 체계로 제정하였다.

제1장 총 설

서론: (기업회계의 목적, 기업회계원칙의 원천 및 기본 성격을 규정함)

제1절 일반원칙 (진실성의 원칙, 정규의 부기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확실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잉여금의 원칙(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구분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등 9가지 원칙을 정합)

제2절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종류는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제표부속명세표로 하고 양식은 보고식으로 함)

제2장 손익계산서

제1절 총 칙 (수익·비용·순이익의 개념, 손익계산의 구분, 발생주의, 실현주의, 총액주의, 손익의 대응표시)

제2절 영업손익계산 (영업수익·영업비용의 개념, 이들의 계산 표시)

제3절 순손익계산 (영업외손익의 개념, 이들의 계산 표시, 순이익의 표시, 전기손익수정의 표시)

제3장 잉여금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1절 총 칙 (잉여금의 개념, 잉여금의 구분, 결손금의 처리)

제2절 잉여금계산서 (잉여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이익잉여금계산, 자본잉여금계산)

제3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제4장 대차대조표

제1절 총 칙 (자산·부채·자본의 개념, 대차대조표의 구분, 기입원칙으로서 완전성의 원칙, 총액주의 담보자산의 표시, 경비와 손실의 이연, 대차평균, 유동성 배열, 과목분류의 원칙등을 규정함)

제2절 자 산 (자산의 내용, 유동자산, 고정자산, 감가상각, 이연계정)

제3절 부 채 (부채의 내용, 유동부채, 고정부채)

제4절 자 본 (자본의 내용, 자본금, 잉여금, 결손금의 표시)

제5절 자산의 평가원칙 (원가주의,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주의의 특례, 유가증권의 평가, 채권의 평가, 유형고정자산의 평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투자의 평가)

여기에서 일반원칙은 손의계산서, 잉여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의 각 원칙은 일반원칙을 준수하면서 각각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 특히 따라야 할 기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원칙은 그 서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회계의 실무 속에서 발달된 제원칙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바를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원칙은 회계관습을 그의 형성모체로 하고, 이것으로부터 귀납된 실천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회계원칙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바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타당’ 하다고 하는 판단근거를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 회계공준을 전제로 하여 회계목적으로부터 연역된 이론규범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기업회계원칙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지는 않더라도 모든 기업이 그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원칙은 법률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적 강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계원칙의 규범에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컨대, 재

무제표규칙과 같은 형식으로 구체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회계원칙은 회계행위의 공정타당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상법, 세법 등 회계와 관련이 있는 제법령이 개폐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뜻에서도 기업회계원칙은 회계실무에 있어서 최선의 길을 안내하여 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 기업회계원칙이 경제관계 제법에 미친 영향

기업회계준칙 기초소위원회는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준칙을 제정한데 이어 이를 원칙·준칙과 관련하여 개정을 요하는 상법과 세법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의 개정을 관계당국에 건의하였다. 이것이 「기업회계원칙과 관련된 세법개정건의서」 및 「기업회계원칙과 관련된 상법개정건의서」이다. 해방후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은 일제가 제정하고 개정을 거듭해 왔던 일본의 상법회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있어서도 제헌헌법 제100조 경과규정 즉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일본 상법을 의용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우리나라 상법이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1938년 개정의 일본상법이 그 효력을 갖고 있었다.⁽⁷⁾ 따라서 1962년 우리나라 상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기한 바 있는 전의서가 반영되어 자산평가에 있어서 원가주의를 기본으로 수용하게 되었으며(상법 제452조), 의용상법에서는 이연자산으로 창업비, 사채발행차금 및 건설이자만을 인정하였던 것이 이에 추가해서 신주발행비(상법 454조)와 사채발행비(상법 제465조 3항)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상법 제정에 따라 1963년에는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상법이 요구하는 계산서류로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처분안 및 계산서류부속명세서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곳에 나타난 대차대조표의 과목분류를 보면 재무제표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산을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계정으로 구분하고 고정자산은 다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자산으로 세분하고 있다. 또한 부채도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고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한 뒤 잉여금은 다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세분한 것은

(7) 宣炳完, “日帝下企業會計制度의 연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부설산업개발연구소 논문집 제7호, 1977년, pp.199-200.

1958년의 재무제표규칙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손익계산서에 있어서도 영업손익계산과 순손익계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세법에도 영향을 미쳐 액면초과금(주식발행차금), 감자차익 및 합병차익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게 되었다.(제10조 제2항) 또한 1968년 세법 개정에서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제26조) 또한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은 1962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입각하여 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 되었¹⁾.

1958년 기업회계원칙이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회계학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자극하고, 실무계에 대해서는 회계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우리나라회계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당시까지 기업의 회계행위에 대해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던 기업에 회계행위에 대한 판단을 갖도록 하였다는 것은, 현재를 비판하고 또 장래에 보다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제시하여 준 것임에 틀림없다.

III. 기업회계원칙의 1·2차 개정

1. 1976년 기업회계원칙 개정 당시의 경제적 환경

휴전 이후부터 1960년대의 초반까지 한국경제는 동란 후의 복구와 물가안정 및 수입대체공업화의 기초단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한국은 대내적으로는 4.19의거와 5.16군사혁명 등 일련의 정치, 사회 대변혁의 와중에서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인 난국에 처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군사정부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기조로 하는 독자적인 종합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출이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1962~1971년동안 연평균 41.3%의 높은 신장을 기록하였으며, 상품수출구조도 크게 개선되어 총수출중 공산품의 비중이 1961년의 22%에서 1971년에는 86%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1962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었던 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즉 1962년에는 총 투자재원중 국내저축에 의한 조달비율이 16.5%에 불과한데 반해서 83.5%가 해외

저축에 의존하는 등 극심한 국내 저축부족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 저축의 비중이 제고되어 1차 5개년 계획기간인 1962~1966년 기간 중에는 평균적으로 국내 저축이 45.8%, 해외 저축이 54.2%로 다소 국내 저축의 비중이 증대되긴 하였으나, 동 기간 중 투자 재원은 5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경공업 우선의 공업화와 그 기반으로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하였다. 그 결과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정유, 비료, 시멘트 등 기간산업과 전력,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부문이 크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공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하여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식량도입, 도농간 소득 격차 등 국민경제의 부담이 점증되고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한편 경제성장에의 자본 조달은 국내 재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외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공업화에 소요되는 개발 재원은 우선 외자도입으로 확보하여 외자에 부수되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생산력이 증강됨에 따라 점차 국민 저축에 의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외자도입의 촉진을 위해서 1960년에 외자도입 촉진법을 제정하고 1967년에는 외자도입 합리화시책을 발표하여 민간기업의 외자도입을 적극 장려하였다. 또한 국내 저축의 증대를 위해 1965년에는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저축장려운동을 전개하였고 1968년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장기의 실업자금을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1960년대 말 그 동안의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 재원 조달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공개와 주식 분산을 통한 기업금융의 근대화와 국내 민간자본의 동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법률은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 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자본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것은 기업의 공개유치, 투자여건의 조성, 한국 투자공사의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경제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해외 경기의 위축,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누적적으로 증대된 외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에 압박을 가하고, 국내 산업부문 간의 구조적 불균형은 국내 시장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되었던 것이다. 투자율은 1969년의 29.7%에서 1972년의 21.1%로 떨어졌고, 경제 성장률은 15.9%에서 5.8%로 하락하여 상대적 정체현상을 보였다. 1970년대 초반에 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정부는 1972년 8월에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단행된 8.3조치로 기업 사채동결조치를 발표하여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했다. 이러한 경기침체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1972년의 10월 유신의 선포와 함께 획기적인 고도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1973년 1월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였다.

중화학공업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내자동원을 위한 금융·세제면에서의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에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고도의 선진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100%의 단독 외국인 투자도 허용하였다. 또한 중화학공업건설의 소요내자를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에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그보다 이른 1972년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고,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조치가 단행됨으로써 종래 폐쇄적인 가족회사 형태의 주식회사가 투자 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개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의 과정에서 산유국들이 석유금수조치를 단행함으로 나타난 제1차 석유파동에 따른 심한 불황과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중화학공업화계획은 1976년경에 가서야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중화학공업은 1972~1975년간에 연평균 20.2%, 1976~1979년간에 21.9%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같은 기간의 경공업의 연평균성장을 18.6%, 12.0%보다 훨씬 높았으며, 공업구조면에서도 제조업 전체에 대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취업노동력을 기준으로하여 1972년의 36.4%에서 1976년에는 46.8%로 증가하였다.

1972년에서 1976년 사이 경제성장을 5.8%에서 15.1%로 증가하여 큰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강력한 중화학공업화정책은 제품에 대한 시장조건과 자금조달의 문제점을 무시한 것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중화학공업화는 전자, 조선 등의 최종생산재부문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은 생산재, 원자재, 자본 및 기술 등을 해외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조립가공형의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었다. 이처럼 중화학 공업화가 자립적, 내포적 발전과정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의 수단으로써 이루어짐에 따라 중화학공업화가 진전되고, 그에 따라 공업구조의 고도

화가 이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내부의 산업간 및 업종간의 분업관련성이 낮아지고 대외의존성은 심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대로 1970년대의 한국의 경제적 환경은 50년대와 60년대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회계제도의 정비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특히 「기업공개 촉진법」의 제정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해관계자의 기업활동에 대한 관심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업공시가 객관적 기준과 통일적이며 신뢰성에 입각한 재무제표에 의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투자를 비롯한 각종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2. 기업회계원칙 1차 개정의 경위 및 내용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한 바와 같이 1970년대에 들어와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투자가를 비롯한 각종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내용을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회계제도의 개선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73년 연초를 전후해서 관계당국에 기업회계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원칙, 회계감사기준 및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기업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공사내에 설치되었으며,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증권심의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발족하게 되었고 동위원회에 증권의 거래 및 회계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내에 설치되었던 기업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1973년 7월에 해체되고 동위원회에서 기초한 기업회계원칙등 개정안이 법적 기구인 증권심의위원회의 기업회계분과위원회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마련된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의 개정안이 제시되고 1973년 9월 1일에는 이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회계원칙개정안을 보면 우선, 회계원칙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회계원칙을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 근거는 당시 증권거래법에 의하였던 것인데, 동법 제126조 제8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상장법인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회계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원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곳에서 말하고 있는 ‘…회계처리의 원칙’은 모든 기업의 회계업무를 지도하

는 원리로서의 원칙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장법인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회계지침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회계원칙은 이론으로서의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행위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체계화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원칙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증권거래법에 따라 특정기업에 대한 회계행위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것을 모든 기업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다른 이해관계집단과 관련시켜 볼 때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 된다. 1973년 9월 1일에 있었던 기업회계원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비판도 있어 기업회계원칙 개정안으로 내놓았던 것을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대통령령(제7199호)으로 공포(1974년 5월 17일)하게 되었다. 이에 이어 재무제표규칙 개정안도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여 재무부령(제1098호)으로 공포(1975년 5월 17일)되었다. 이렇게 되어 당초 의도하였던 기업회계원칙은 개정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업회계원칙이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또 재무제표규칙이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마저 있었다.⁽⁸⁾ 그러나 이들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으로서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회계행위의 지침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래 의도하였던 기업회계원칙에 대한 개정은 1976년에 가서야 재무부 증권심의위원회 기업회계분과위원회에 의하여 1차 개정(제2차 중간보고)을 거쳐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보고(1976년 7월 22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및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과 실질적으로 내용상 다른 것이 없음에도 형식상으로는 회계행위의 기준이 상장회사등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회사에 적용되는 원칙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원칙으로 이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6년에 개정된 기업회계원칙은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점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1) 회계목적이 회계정보이론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칙의 전문은 회계목적에 관해서 “기업회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에 대하여 올바

(8) 이 문제에 관해서는拙稿 “우리나라企業會計原則에 대한反省”, 경영논집 제9권 제2호(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한국경영연구소, 1975), pp.39-40참조.

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유용하고 진실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보회계이론이 우리나라 기업회계목적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회계정보의 속성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신뢰성 및 충분성의 원칙을 일반원칙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으로 신뢰성, 계속성, 중요성, 안전성, 명료성, 충분성 등 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2) 재무제표의 체계 및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에서는 재무제표로서 ① 손익계산서 ② 잉여금계산서 ③ 잉여금처분계산서 ④ 대차대조표 ⑤ 재무제표 부속명세표 등 5가지로 되어 있었으나, 1차 개정된 기업회계원칙에서는 재무제표로서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부속명세서 등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제표로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고 잉여금계산서가 제외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위의 재무제표 순서가 중요성에 따라 배열된 것이라고 보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래의 손익계산서 중심의 회계에 대한 비판에 영향을 받아 대차대조표가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⁹⁾ 또한 잉여금계산서가 제외되게 된 것은 종래의 당기업적주의로부터 포괄주의로 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이 이행됨에 따라 폐지된 것이다.

손익계산서 양식의 비교표

1958년「기업회계원칙」	1976년「기업회계원칙」
매출액	XXX
매출원가	<u>XXX</u>
매출총손익	XXX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u>XXX</u>
영업손익	XXX
영업외수익	<u>XXX</u>
당기총손익	XXX
영업외비용	<u>XXX</u>
당기순손익	<u>XXX</u>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경상손익
	특별이익 및 특별손실
	법인세공제전순손익
	법인세, 주민세
	당기순손익

(9)拙稿“傳統會計理論에 대한反省과財務諸表目的設定의方法論的考察”[회계]제16호(한국공인회계사회, 1979년 3월), pp.42-44.

(3) 1958년 기업회계원칙에서는 당기업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서 1976년 「기업회계원칙」은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바뀜에 따라서 종래 잉여금계산서에 기재되던 특별항목(특별이익 및 특별손실)과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기재되던 법인세가 포괄주의하에서는 손익계산서의 하단에 기재하게 되었고 잉여금계산서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잉여금계산서의 구분도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잉여금으로 4구분하게 되었다. 당기업적주의에서 표현되는 순이익을 경영자의 업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그리고 포괄주의에서 표현되는 순이익을 주주지분의 증감을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때, 당기업적주의에서 포괄주의에로의 전환은 주식투자를 겨냥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

(4) 자금운용표와 미처분이익잉여금명세서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추가하였다. 자금운용표가 재무제표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 재무제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속명세서로나마 자금운용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학계 및 업계에서 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반적 추세에 부응한 조치로서 다행한 일이다. 이곳에서는 명문화는 시키지 않았으나 순운전자본개념으로서의 자금운용표를 작성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5) 연결재무제표를 제도화하였다. 즉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의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와의 관계를 단일조직체로 보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기업이 법률상으로는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중심적인 지배의사에 있는 기업단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6) 재무제표를 계정식 또는 보고식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특수판매(위탁판매, 할부판매, 시용판매, 예약판매) 및 장기청부공사에 관한 수익의 실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8) 원가주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였고 자산재평가에 의한 시가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9) 기타자본잉여금의 범위(국고보조금, 보험차익, 공사부담금, 자기주식매각익,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0)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화표시자산 및 외화표시부채에 관한 계정과목(예:

외화부채조정계정, 외환차손익, 외화평가손실, 외화부채조정계정상각 등)과 이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새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1976년 기업회계원칙에 나타난 개정의 주안점은, 형식면에서는 일본의 수정기업회계원칙에 영향을 받아 손익계산에 신포괄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원리면에서 보면 종래 기업회계원칙에서 추구하였던 계몽적 실무지침적 성격을 탈피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회계정보이론의 영향을 흡수했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회계원칙 2차 개정의 경위 및 내용

1976년 말에 증권거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제도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1977년 2월에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종래 증권관리위원회가 직접 주관해 왔던 회계제도의 관리문제를 전담하게 되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977년 6월에 그 산하에 회계에 관한 자문 기구로서 회계제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회계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1979년 6월부터는 회계규정의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증권관리위원회는 먼저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80년 11월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0061호)하였으며, 뒤이어 1981년 4월에는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도 재무부령(제1479호)으로 개정 공포하였다.

한편 1976년 기업회계원칙의 개정(1차개정, 제2차 중간보고)이 있은 이래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회계의 국제조류에 부응하는 한편 기업내용의 공시기능을 확대하고 회계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인식되어 1981년 1월 24일에 증권관리위원회의 회계제도자문위원회는 제2차로 기업회계원칙(제3차 중간보고)을 개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어 재무제표규칙도 동년 6월 3일부로 재무부고시(제891호)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개정의 근본 취지는 기업회계의 국제화에 따라 재무보고의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개정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회계제도의 통일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회계원칙중 1981년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를 재편하였다. 즉 재무상태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신규채택하는 한편 재무제표의 체계를 손익계산서 중심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로 된 것이다.

(2) 기업내용의 공시강화 및 정보제공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직전년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대차대조표 항목을 재분류 조정하였다. 즉 종래 원칙의 고정자산에서 투자 및 기타 자산을 독립시켜 자산을 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으로 4구분하였고, 특정수익의 이연을 위한 이연부채를 신설하여 부채를 유동부채·고정부채·이연부채로 3구분하였다. 그리고 자본을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3구분하였다.

(4) 이연자산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즉 개발비는 이연자산에서 삭제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게 하였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에서 차감 표시도록 하고, 배당건설이자는 자본에서 차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연자산의 범위는 창업비·개업비·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시험연구비·환율조정차로 된 것이다.

(5) 전기손익수정항목 중 오류에 의한 것은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토록 하였다.

(6)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즉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취득일 또는 부담할 당시의 환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화폐성·비화폐성법에 의한 환산방법을 채택함)

IV.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 그의 개정

1. 기업회계기준 제정당시의 경제적 환경

1977년부터 시작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자립적인 성장구조의 구축, 사회개발에 의한 경제적 기초의 확립, 기술혁신 및 능률향상이란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공업화 및 수출지향적 고도 성장을 추진한 결과 1977년 말에는 수출액이 100억불에 달하는 등 경제개발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제1차 석유파동의 극복과 중동시장에의 진출 그리고 1976년부터 1978년간에 걸친 사상 최대의 호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걸쳐 중동건설대금의 미수등 문제점과 중화학공업 개편이란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국제적으로는 1979년에 발발한 제2차 석유파동이 원유가를 폭등시켜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진제국이 금융 긴축을 강화하였고 고금리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국제수지의 악화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 성장을 목표치 9.2%에 훨씬 미달하는 5.8%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의 무리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과

1979년 10.26사태등의 정치적 불안의 악재가 겹쳐 한국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겪은 결과, 1980년에는 연간 38.9%의 도매물가상승률과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4.8%)을 기록하였다.

즉, 이러한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제2차 석유파동, 사회적 불안정, 추곡의 작황부진, 10.26사태 이후의 사회·경제적 불안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경직된 경제운용방식이 물고온 누적된 모순과 적폐가 불황을 틈타 일시에 현재화하고 상승작용을 한 것도 큰 원인이 되었다.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추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 문제점들이 세계경제의 침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고 이들이 1980년을 전후한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더욱 심화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심한 불황을 겪었다. 양적인 팽창정책의 추구에 따른 통화증발로 인플레이션이 누적되어 국내저축능력은 침식당했고, 경쟁력은 약해졌으며, 국제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었다. 1981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경제안정에 최우선점을 두고 재정적자의 해소,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각종 물가상승의 억제, 임금수준의 동결 등의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982년 이후의 물가는 점차 안정되어 갔다. 이와 아울러 1980년 이후의 해외저축률은 감소하는 반면 국민저축률은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정부가 외채 누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리인상을 통한 금융저축의 신장, 새로운 금융자산의 개발, 자본시장의 육성 등의 방법으로 외자보다는 국내저축으로 기업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¹⁰⁾

또한 민간주도체제로의 이행과 함께 불필요한 경쟁제한요인을 지양하고 경쟁촉진에 의한 시장메카니즘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1년 4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그간 중화학공업화의 진전과정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전개로 비경쟁적인 것이 되었던 산업조직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경제체질개선과 능률제고를 꾀하였다.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자유화와 기업의 민주화 및 국제화를 위해서는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업회계제도의 적정화와 효과적인 회계감사제도의 확립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기업회계원칙은 단일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회계감사제도는 배정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감사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81년에는 기업회계원칙의 2차 개정이 있

(10) 權泰殷, 韓國會計制度法, 同文館 1989년, pp.164-165.

은 후에 다시 종래의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과 기업회계원칙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이 통일되고 강제법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1982년 3월에는 회계감사기준과 보고준칙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12월에는 이에 대한 부분 개정을 하였고 회계감사실시준칙이 제정되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특수한 업종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한 업종의 성격을 반영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1983년 1월에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1985년 1월에 리스회계기준을, 1986년 12월에는 합병회계준칙을, 1987년 4월에는 연결재무제표준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1982년 이후의 한국경제는 국내적인 구조조정과 체질변화와 함께 국제적인 3저현상(원유가격의 하락, 달러화 가치의 하락, 국제금리의 하락)의 호재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게 되어 1986년 이후에는 국제수지 적자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대내적으로는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한국경제의 주요 비교우위 원천이었던 저임금의 토대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원화절상과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되는 어려움에 처하였다. 생산성향상속도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의 불안요인과 3D 현상으로 제조업의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고용구조의 불균형과 기능공 및 단순공의 인력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기술축적에 따른 고부가가치제품에의 주력과 산업구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기계류, 부품 및 소재산업부문의 기술수준제고와 첨단기술산업의 도입을 촉진하게 되었다.

2. 1981년의 기업회계기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에 관한 규정체계와 내용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선진 회계제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정착된 것이 1981년 12월 23일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다. 이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은 1980년 12월 말에 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상장법인은 물론이고 일정기준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회계처리수준의 향상을 통한 건전한 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과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서는 아니되게 되었다. 따라서 증권관리위원회는 1981년초에 이미 개정이 끝난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및 동재무제표에 관한 규칙과 전술한 바 있는 내용으로 개정된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 그리고 주식회사의 계산서류에 관한 건 등

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조정하는 작업이 동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져, 1981년 12월 23일에 기업회계기준이란 명칭으로 제정하여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형식으로 공포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있어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외부감사법인등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감사대상회사 이외 기업의 회계처리에 이를 적용한다”(「기준」 제133조)고 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 기준에 의거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일원화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준칙 및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 발표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의 세부지침과 해석등에 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총 9장(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부채의 평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부속명세서, 연결재무제표, 보칙등) 13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종전의 여러 회계규정의 내용을 통합정리한 것일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종전 규정 내용에 특수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종래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원칙 규칙들이 혼존하고 있어 회계업무상 비능률과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통합되어 일원화된 기업회계기준으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회계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를 감사하는 법률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회계행위의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뭔가 생각해 볼 여지를 갖는다. 즉 회계행위의 기준은 법률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는 아닌 것이며, 회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결코 법에 추구하는 목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3. 1984년 기업회계기준 1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1981년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회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계행위의 최고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를 감사할 경우에 판단기준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감사기준이 없어서는 안되었고 그에 따라 마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업회계기준이란 명칭으로 종래의 회

계관계의 제원칙, 규칙, 규정 등을 통폐합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포된 것이었다. 이같은 점에서 종래 사용하던 기업회계원칙이란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으로 바꾸고, 실천적 성격을 갖는 회계행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대상기업은 자본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동법 제2조), 이 법률에 따라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부감사대상 법인뿐만 아니라 그밖의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기업회계기준은 회계학에서 추구하는 회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계행위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계행위의 기준인 상법회계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상법의 개정, 세법의 개정 등 상법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상법회계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이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이 볼 때 1984년 9월 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1차로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서 (1) 상법의 개정 (2) 「증_」의 폐지 (3) 1981년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가 있다.⁽¹¹⁾

① 상법의 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우리나라 상법은 1962년에 제정·공포된 이래 22년만인 1984년 3월에 개정·공포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법의 개정을 보게 된 것은 "1963년 1월 상법이 시행된 이래 기업의 규모와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간이나 상법이 개정되지 못하여 기업현실과 상법 규정간의 괴리가 극심하고 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이에 당시의 경제적 여건과 기업의 실태를 찬작하여 회계제도의 남용에 의한 부실기업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고, 주식회사 기관의 합리적인 재편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주식의 상호보유를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기업현실에 적합한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데 그 개정이유가 있다."⁽¹²⁾ 이와 같이 하여 개정된 신상법은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가급적 배제시키려고 노력하여 여러 상법 조문에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업회계기준에 대폭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도 일부 개

(11) 申廷植, 改正企業會計基準에 대한 小考, 「회계와 세무」 1984년 10월, pp.57-66.

(12) 孫珠贊 외 4인 공저 「改正 商法解說」 삼영사, 1984년 p.133.

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② 「증_」의 폐지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그 목적과 운영 방법 및 절차상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회계 실무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와의 마찰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재무부는 1975년 11월 17일자 행정지시로 「증_」인(재무부 증권보험국 증권_과의 공문에 쓰이는 약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표시에 대한 의견」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내어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특별상각, 탑광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기업회계원칙에 따르지 않고 법인세법 등에 따라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행정지시(「증_」1224-1852)를 하였던 것이다. 「증_」로 이와 같은 행정지시를 하게 된 것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기업이 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정 또는 부적정의견을 받게 되자, 재무부측에서는 기업회계원칙과 세법과의 갈등 속에서 세법을 따른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1976년 3월 의견 제5호를 발표하여 1975년 11월 30일부터 종료하는 상장법인과 계열법인 감사에 있어서 위의 「증_」의 지시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다른 한정사항이 없는 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본래 「증_」는 기업회계원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이고 오직 공인회계사의 감사시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나 이와 같은 임시적이고도 경과적인 정부의 조치가 장기간 운영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실무를 지휘하는 형식으로 되어 기업회계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증_」가 회계 원칙을 오도시키고 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더불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자 「증_」의 행정지시사항의 일부를 오히려 기업회계기준으로 수용시켜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다.⁽¹³⁾

이와 같이 볼 때 1984년도 개정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의 일부 개정에 힘입어 기업회계에 접근시킨 면도 없지 않으나 출발점으로부터 그려하듯이 기본적으로는 상법 또는 세법에 맞추어 상법회계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국제화 및 자본자유화가 점차 확대 진전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기

(13) 南相午, 現行會計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黃炳煥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84년 10월, p. 396.

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어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준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상법의 개정 및 「증2」의 폐지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외에도 1981년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이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상 및 실무상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고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심의와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이 1984년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84년에 있은 기업회계기준의 1차개정은 (1) 상법의 개정 (2) 「증2」의 폐지 (3) 1981년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보완 등 3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정되었다.

1)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

- ① 자본준비금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기준」 제56조, 제57조)
- ② 상호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보충적 주석문항을 신설함.(「기준」 제63조)
- ③ 주식배당과 신주인수권(증서 및 증권)의 발행 및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신설 함.(「기준」 제78조, 제 108조)
- ④ 이익준비금의 정립 기준을 변경함.(「기준」 제 108조)
- ⑤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을 정리함.(「기준」 제109조)

2) 「증2」의 폐지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내용

- ① 대손회계처리기준을 수정함.(「기준」 제75조)
- ② 퇴직급여충당금 회계를 정상화함.(「기준」 부칙 제2항)
- ③ 특별상각을 기간비용으로 인정함.(「기준」 제87조의 2)

3) 1981년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보완

- ① 연결범위를 확대하고 연결재무제표기준을 별도로 제정함.(「기준」 제6조, 제121조~제130조, 부칙3항)
- ② 영업권 계상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부여함.(「기준」 제36조)
- ③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증을 허용하고 저가평가기준을 완화함.(「기준」 제92조)
- ④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보완함.(「기준」 제93조)
- ⑤ 관계회사의 주식평가방법을 개선함.(「기준」 제93조)
- ⑥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단순화함.(「기준」 제103조)
- ⑦ 해외사업장, 외화환산특례를 본문에서 규정함.(「기준」 제103조의 2)
- ⑧ 업종별 회계처리를 연결재무제표기준과 리스회계처리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형식으로 격상시킴.(「기준」 제131조)

4. 1985년 기업회계기준 2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1984년 기업회계기준을 1차 개정할 때 행정지시인 「증二」의 내용을 수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퇴직급여총당금 부족액을 1985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 이상을 추가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85 회계연도에 이르러 국내외의 경기가 투명하지 못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저조한 상황에서 당해년도의 퇴직급여총당금과 과년도의 퇴직급여총당금 부족액을 일시에 설정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어 퇴직급여총당금 과거 부족액의 추가설정을 당분간 유보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투자주식평가에 대한 종래의 규정이 단순히 장부가액과 피투자회사의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만을 비교하여 평가감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목적과 투자거래현실을 적절히 반영 치 못하는 문제점, 즉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적 대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순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서도 경영권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¹⁴⁾

1985년 12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총당금 추가설정 유보

- ① 퇴직급여총당금 부족액을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때까지 그 계상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부칙)

2) 투자유가증권평가방법의 개선

- ① 경영권이 있는 투자주식은 시가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함. (「기준」 94조)
- ② 경영권이 없는 투자주식의 평가기준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의 100분의 30이상(종전에는 100분의 50이상) 하락한 경우로 강화함. (「기준」 94조)

3) 기타 개정사항

- ①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 과목별 구분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기준」 42조, 50조)
- ② 이연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매결산기에 균등액을 (종전에는 균등액 이상이었음) 상

(14) 證券監督院, 證券監督院十年史, 1987, p.396.

각 또는 환입하도록 함. (「기준」 98조)

5. 1990년 기업회계기준 3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회계기준이 1981년 12월에 제정된 이래 1984년과 1985년의 두 차례에 걸친 부분적 수정을 하여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확대 및 국제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및 자본자유화 등의 경제환경 변화와, 증권시장의 발전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적정공시 요구의 확대, 그리고 기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하여 동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용하고 회계정보에 대한 일반의 요구에 부응하며 종래의 회계기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회계제도자문위원회에서는 2년 여간의 준비과정과 관련기관의 의견 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동개정안이 1990년 3월 29일에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제3차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기준 시행일(1990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제3차 개정내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국제화 및 자본시장의 개방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 신설된 기준

- ① 금융선물상품(선물환, 스왑, 선불, 옵션등)의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준」 제103조의 3)
- ②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즉 외화환산손익을 관련외화항목의 장단기에 불문하고 당기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해외지점 또는 사업소와 해외종속회사의 외화환산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기준」 제103조, 제103조의 2 및 부칙3, 8)
-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르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준」 제45조, 제48조, 제57조의 2, 제100조 및 부칙6)
- ④ 전환사채의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준」 제45조, 제48조, 제57조의 2, 제100조 및 부칙 6)

2)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

- ① 유가증권, 재고자산, 투자주식 등 저가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 유가증권의 저가평가방법을 총계평가법으로 축소시키고 저가평가의 강제기준인 30%하락 기준을 세 가지 자산 모두에 대하여 삭제함. (「기준」 제92조, 제93조, 제94조)

- ② 퇴직급여총당금의 당해연도 설정금액과 과거 부족금액의 설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기준」 제47조의 2 및 부칙 5)
- ③ 재무상태변동표를 개선하였다. 즉 자금의 개념을 종래의 총재무적 자원개념에서 운전자본개념으로 변경시키고 비자금 거래의 내역과 순운전자본의 증감명세를 재무상태변동표에 표시하는 방법을 간소화함. (「기준」 제112조에서 제118조 까지)
- ④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조문에 산재되어 있던 자산재평가 관련조문을 한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음. (「기준」 제91조의 2에 통합)
- 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기손익수정항목에 대한 주석 공시를 강화하였음. (「기준」 제110조)
- ⑥ 회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여 임의변경을 억제함과 아울러 공시내용을 강화하였음. (「기준」 제111조)
- ⑦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대상을 변경하였다. 즉 장기차입금에 한정하던 건설자금이자를 단기차입금까지 확대시키는 한편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처리를 강제규정으로 전환함. (「기준」 제96조)
- ⑧ 관계회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기준」 제9조)
- 3)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개정된 사항
- ① 자산·부채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를 가능도록 하였음. (「기준」 제102조의 2, 부칙 7)
- ② 자기주식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 (「기준」 제62조의 2)
- ③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을 주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 (「기준」 제90조의 2)
- ④ 이연자산에 포함되어 있던 환율조정차를 제외시키고 이연부채의 내역 중에서 환율조정대는 삭제하고 장기성 선수수익은 고정부채로 구분하였음. (「기준」 제38조)
- 4) 기타의 개정사항
- ①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유사과목에 통합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과목 중 중요한 것은 구분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회사 및 외화자산·부채 등은 중요한 경우 구분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준」 제6조의 2)
- ② 계정과목을 조정하였다. 즉 종래의 현금, 예금은 현금과 예금으로, 대손총당금전입

액은 대손상각으로, 시험연구비는 연구개발비로,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상각은 사채이자로, 관계회사단기부채는 관계회사단기차입금으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부채는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으로 각각 변경하였음.

③ 재무제표에 공시가능한 금액단위를 종래의 천원에서 천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공시 가능하도록 하였음. (「기준」 제7조)

6. 1990년 이후의 기업회계기준 개정배경 및 내용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같이 1990년 3월에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은 후 동년 9월과 1994년 4월에 부분적인 수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선 1990년 9월에 개정된 것은 “유가증권등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이다. 이 경과조치에 의하면 유가증권, 재고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및 시장성있는 관계회사주식(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한 주식에 한함)으로 그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1990년 3월에 개정된 유가증권 저가평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이 및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제4차 개정) 이와 같이 유가증권 저가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의 적용을 2년동안 유예하기로 함으로써 이 조치를 계속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992년 7월에 이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5차 개정) 따라서 현재로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등의 평가에 관한 저가평가를 강제하는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유가증권의 평가기준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신봉되어 오는 저가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4차 및 5차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결과 상장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든지 아니면 저가주의에 따라 시가와 취득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1989년 말 이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재무부가 각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해주면서 주식매입을 독려한 결과 각 금융기관들의 저가평가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손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재무부는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거액의 유가증권평가손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관의 주도하에 회계기준이 개폐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남용의 예를 유가증권의 평가문제에서 보여준 것이다.

1994년 4월 30일에는 종래 재무제표의 하나로서 재무상태변동표(순운전자본개념)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현금흐름표로 변경시키는 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재무상태변동표 또는 현금흐름표는 1974년 이전까지 이의 작성원리와 방법에 관한 분석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회계학의 관련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취급하여 자금운용표란 명칭으로 일반에게 보급되어 왔다. 그리고, 이의 재무제표상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원리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영분석 및 재무관리의 교과목에서 부분적인 연구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다가 1974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자금운용표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하나로 작성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76년에는 위와 동일한 규정이 개정된 기업회계원칙에 삽입되었다. 1980년 11월에 개정된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자금운용표를 총재무적자원 개념에 따라 작성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보고서의 명칭도 재무상태변동표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더불어 재무제표의 하나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1990년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금의 범위를 순운전자본 개념으로 변경하고 보고양식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무상태변동표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국제회계의 조류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3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18차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회의에서도 회원국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것을 결의한 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국제화 및 자본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30일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변동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하였고, 작성방법의 선택적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실무적 수용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현금흐름표를 사용하게 된 역사는 비교적 짧고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에 와서 이 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 (1993년 12월)되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상각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실무적 수용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기업회계기준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변동표를 현금흐름표로 대체함.

- ① 재무제표의 종류로서 재무상태변동표 대신 현금흐름표로 대체됨. (「기준」 제5조)
 - ② 현금흐름표의 정의(「기준」 제112조)
 - ③ 현금흐름표의 구분은 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④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표시함. (「기준」 제113-116조)
 - 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함. (「기준」 제114조)
- 2) 특별상각 조항의 삭제(「기준」 제87조 2항)

V. 결 언

이상에서는 1950년대 후반기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이 제정되어 경제사회의 변천에 따라 수정 및 개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업회계원칙을 마련할 당시만 하더라도 6.25동란으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기 전이라 한국경제는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학문적 수준도 발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6.25동란의 막심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미비한 기업회계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 되게 되었다.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업의 경제 및 경영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회계제도의 구체적 조치로 나타난 것이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다. 비록 이것이 당시 일본의 대장성에서 마련한 기업회계원칙에 크게 의존하여 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갖는 경제적·사회적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에서 회계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까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늘날 선진 제국가의 회계제도의 성립과정을 보면 특정의 경제여건을 배경으로 한 회계실무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오랜 시일을 두고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을 이루어 가면서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어 회계관습으로 나타나 산업사회 전반에 보급되게 되어 사회적 승인을 받아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성립하게 된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의 회계제도는 거의 예외없이 이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확립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제도는 선진사회에서 발달하여 형성된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경제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정을 가한 뒤 경제사회를 지도하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서 확립된 것이다. 1958년에 마련된 기업회계원칙의 서론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원칙은 “기업회계의 실무속에서 발달된 제원칙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바를 요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무 속에서 발달한 제원칙”이란 어디까지나 선진사회에서 발달한 회계실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실무를 지도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하여 회계행위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미봉책으로 다양한 회계규정 및 준칙이 제시되어 회계실무에서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원칙, 규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오다가 1981년에 기업회계기준이란 명칭으로 종래의 각종 회계행위의 원칙, 규칙 및 규정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로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시기에 돌입하여 지금까지 6차례 걸친 개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계원칙은 기본적으로 회계실무를 지도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경제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회계제도도 다르게 되고 또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회계지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그간의 상황을 보더라도 기업규모의 성장·확대에 따라 그에 맞는 회계행위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어 예를 들면 연결재무제표기준, 리스회계처리기준 등 업종별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었고, 기업이 국제화되고 자본자유화함에 따라 회계정보의 적정공시문제와 더불어 금융선물상품,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전환사채의 문제 등 그에 수반되는 회계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원칙과 기업회계기준은 이들이 제정될 당시의 기본틀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 환경이 변화하여 이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체제에 신규 규정을 삽입 또는 수정하는 형식으로 변화에 적용하여 왔다. 그것도 처음에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정 또는 수정되었으나 점차로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이의 제정기구 및 제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원칙)은 한 국가에서 발달한 회계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회계담당자가 회계행위를 수행할 때 회계가 지향하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회계행위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과 기본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계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거래활동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행위는 물론이지만, 회사의 회계보고서

를 감사하는 회계행위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또한 이곳에서 말하는 회계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회계기준(원칙)이 이론으로서의 보편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하여 회계기준이 회계이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회계이론은 일정한 입장에서의 수미일관된 논리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기준은 여러가지 입장을 조정 타협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의 소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회계기준은 하나의 입장이 일관성 있게 되어 있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청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형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회계이론과 회계기준은 서로 다르다.

다음으로 회계기준은 본질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한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회계기준은 회계의 중대한 관계문항만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떤 특정의 규칙이나 절차와도 그 성격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기준은 여러 가지 대체적인 규칙이나 절차를 암시하여 선택가능한 대체안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제공한 것이다. 세법등의 법규도 이와 같은 규범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요청은 회계기준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회계기준은 회계실무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즉, 회계기준은 혼란하는 회계실무를 기술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무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마련한 것으로써 이는 최선의 실무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계기준은 현행의 표준적인 회계실무를 성문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회계실무를 고정화시켜 비탄력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회계기준은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경제사회가 요청하는 회계기준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회계가 이루어지는 행위의 지침도 그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회계기준은 자연과학분야의 법칙과 같이 고정적이고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 및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제정기구와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실질적으로 재무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의 관료적 행태가 기업회계기준을 자주 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면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기업의 회계제도는 본래 기업 그 자체의 존속, 발전을 꾀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집단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회계처리가 어떤 특정의 이해관계자집단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특정이해관계자에게는 불리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행위의 지침을 마련한 것이 회계기준이다. 그러므로, 회계기준은 각종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여하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을 들이켜 볼때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꾸준히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계기준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데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 고 문 헌

1. 동양문헌

- 高承禧, 韓國會計原則의 展開, 檀大出版部, 1986.
- 權泰殷, 韓國會計制度論, 同文館(日本), 1989.
- 經濟企劃院, 經濟白書, 1967-1990.
- _____, 主要經濟指標, 1972-1990.
- _____, 新經濟 5個年計劃(93-97), 1993.
- 金潤煥 외 10인, 韓國經濟의 展開過程, 돌베개, 1981.
- 金日坤, 韓國經濟發展論, 貿易經營社, 1986.
- 南相午, “現行會計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黃炳竣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84.
-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 20년의 回顧와 反省, 1983.
- _____, 韓國의 商工業 100年, 1985.
- 朴玄塲 외, 韓國經濟論, 까치, 1987.
- 三星秘書室, 三星五十年史, 1988.
- 宣炳完, “日帝下 企業會計制度의 研究,” 全北大 商科大學附設 產業開發研究所 論文集 第7輯, 1977.
- 孫珠瓊·李範燦·梁承圭·朴吉俊·李均成 共著, 改正商法解說, 三英社, 1984.
- _____, “韓國近代會計制度의 研究,” 全北大 論文集 第20輯, 1978.

- 申廷植, “改正企業會計基準에 대한 小考”, 會計와 稅務, 1984. 10.
- 辛泰坤, 韓國經濟政策論, 法文社, 1991.
- 李正浩, “會計原則審議會의 第4報告書에 관한 分析的 考察,” 經營學論文集 第2卷 第1號, 서울大 經營大學院, 1972.
- _____, “會計基準의 制定方向,” 經營學研究 第4輯, 韓國經營學會, 1974
- _____, 會計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5.
- _____, “會計原則의 生成과 歷史的 背景,” 經營論集 第8卷 第1號, 서울大 經營研究所, 1979. 3.
- _____, “美國에 있어서 會計原則의 生成과 發展,” 經營論集 第17卷, 서울大 經營研究所, 1983.
- _____,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85.
- 李海東, 李秉彥, 財務諸表規則解說, 一朝閣, 1959.
- 李炯九, 韓國經濟論, 博英社, 1989.
-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經濟政策 四十年史, 1986.
-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博英社, 1984.
- 證券監督院, 證券監督院 十年史, 1987.
- 韓國公認會計士會, 公認會計士會 三十五年史, 1992.

2. 서양문헌

- AAA,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48.
- _____,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 _____,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Affecting Corporate Reports*, 1936.
- AICPA,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APB Statement No.4*, 1970.
- Chatfield, M.,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revised edition, 1974.
-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1, No.2, No.5, No.6*.
- Littleton, A. C.,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1933.
- Sanders, T. H., Hatfield, H. R. and Moore, U., *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1936.
- Woolf, A. H., *A Short History of Accountants and Accountancy*, 1912.